

『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시설에 반입되는 생활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
- 시설물의 유지·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관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환경자원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의 범위 규정
 - 소각시설, 매립시설, 재활용시설, 주민편익시설
- 시설의 운영방법은 시장이 필요한 조직을 설치·운영하거나 위탁운영토록 함
 - 민간위탁시 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도록 함
 -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에 상정·심의 후 그 기간을 갱신토록 함
- 반입대상 폐기물은 구미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로 함
-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로 생산하는 전력은 전기판매업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토록 함

- 주변지역주민을 위하여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주민편익시설 위탁 운영 시 적자발생에 대한 손실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
- 폐기물의 처리시설 반입·처리과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주민감시 요원을 위촉토록 제정하였음

4. 참고사항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, 제31조
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」 제20조, 제22조, 제25조, 영 제24조, 영 제27조, 영 제35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7조

5. 검토의견

-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설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물의 유자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위해 제출된 사항으로
- 환경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업무를 규정하고 처리시설을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탁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으며
- 반입대상 폐기물과 반입 수송료의 부과·징수, 반입제한 규정을 두어 폐기물 처리 시설보호와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하였고

- 소각열 공급방법 및 주변지역 지원, 주민감시요원의 위촉, 주민
편익시설운영 지원에 관한규정을 명시 하였으며
- 「폐기물관리법」 , 「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」 ,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 관련 법령에 부합되게 제정된
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